「탄소신업 활성화 T2B 지원시업」 우수탄소기업 지정 추기모집 공고

(재)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활성화와 기업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수탄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> 2024년 11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(재)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1. 개요

- □ 공고명칭 :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사업 우수탄소기업 지정 추가모집 공고 □ 공고목적
 - 우수 탄소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발굴을 통한 탄소기업 지정 지원
 - 우수탄소기업 발굴을 통한 사업 집중 지원으로 대외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탄소산업 활성화 도모
- □ 모집기간 : 2024. 11. 12.(화) ~ 2024. 12. 3.(화) 18:00
- □ 접수기간 : 2024. 11. 12.(화) ~ 2024. 12. 3.(화) 18:00
- □ 지정기간 : 2025. 1. 1. ~ 2026. 12. 31.(24개월)
- □ 지정방법 : 평가위원회 <u>서면평가</u>를 통해 우수탄소기업 지정(1개사)
- □ 선정평가 : 2024. 12월 중

^{*} 선정평가 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평가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

2. 모집 대상 및 혜택

□ 모집대상

- 도내에 본사 또는 연구·생산시설을 갖춘 기업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탄소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며 탄소기업 심의위원회¹⁾를 통해 지정된 기업 중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충족기업
 - 1) 직전년도(2023년) 매출액 3억원 이상 기업
 - 2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・운영
 - 3) 탄소제품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
 - 4) 탄소 관련 중앙 R&D과제 수행(주관 및 참여)기업 (최근 3개년)

- 신청제외 대상

- ① '24년도 우수탄소기업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
- ② 탄소기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을 받지 못한 기업
- ③ 이미 지정된 우수 탄소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(단,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- ④ 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기업
- 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
- ⑥ 최근(2023년)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
- ⑦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
- ⑧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 등
- ⑨ 부동산업, 유흥업 등 정부 지원사업 제한분야 제외 등

□ 선정기업 혜택사항

-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(5점)
-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 경감(10%)
 - 일반 기업 대비 지원비율 상향을 통해 기업 부담 감소

¹⁾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_ 곽한 조례 제2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

3. 추진 절차 및 평가 방법

□ 추진 절차

지정 모집 공고	→	홍보	→	신청/접수
				•
최종 선정& 지정서 교부	←	선정위원회	←	서류검토

- □ 평가방법 : 평가위원회 서면평가를 통해 우수탄소기업 선정
- □ 평가기준

검토항목	평가지표	세 부 내 용
지정 기준 부합성 (50)	○ 사업 목적의 부합성(10)	- 사업 목적의 타당성 및 부합성
	○ 기업의 핵심 사업분야 부합성(20)	- 기업 사업분야와 사업내용의 부합성 - 사업의 목표의 구체성
	○ 기업의 탄소 제품의 활용성(20)	- 기업의 탄소 제품의 명확성 및 활용성
기술성 및 사업성 (20)	○ 주 생산품의 사업성(10)	- 주 생산품의 강점 및 경쟁력
	○ 보유 기술의 우수성(10)	- 국내·외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
기대효과 (20)	○ 매출 및 이익 가능성(10)	- 기업의 매출 향상 및 성장성 등
	○ 파급효과(10)	- 기업의 고용창출, 사회적 기여도 등
기업역량 (10)	○ 우수성 / 품질인증 / 지식재산권	- Inno-Biz기업, Main-Biz기업, 벤처기업, 경영혁신형기업,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- 최근 3년간 품질규격인증유무, 국내/외 특허, PCT, 실용신안, 의장 등

^{*}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신청 및 접수

- □ 공고기간 : 2024. 11. 12.(화) ~ 2024. 12. 3.(화) 18:00
 - 전북테크노파크(www.jbtp.or.kr) 및 전북 R&D종합시스템(http://rnd.jbtp.or.kr) 공지사항 게재
- □ 접수기간 : 2024. 11. 12.(화) ~ 2024. 12. 3.(화) 18:00
 - 마감시간 이후 건은 과제신청이 불가
 -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 입력완료 요망(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)

□ 신청방법

- 전북R&D종합정보시스템(http://rnd.jbtp.or.kr) 회원가입 후 [과제신청]에서 접수
- 사업접수 시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를 폴더 안에 아래 서류번호순 으로 나열하여, 폴더를 "*.zip"파일로 변환 후
 - "2024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사업_(기업명)" 으로 변경하여 업로드
- 제출서류 : 사입신청서(양식) 및 구비서류 1식 일체 "*.zip" 파일 제출 (사업신청서는 가능한 한글파일(직인필수)로 제출 요망)

□ 제출서류

○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

No	제출서류	비고
1	○신청서【서식 제1호】	
2	○사업계획서【서식 제2호】	
3	○ 신용정보 조회동의서【서식 제3호】	
4	○ 사업자등록증	
5	○ 2024년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	
6	○ 지원기업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(2021년도, 2022년도, 2023년도)	필수
7	○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	
8	○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	
	○기타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	
9	- 직전년도 매출(3억원이상) 증빙 /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/ 수출실적증명원(품명, 금액 포함)	
	탄소관련 중앙R&D과제 요약문【서식 제4호】 중 택1 이상	
10	○ 기업/기술 소개자료(자유양식)	선택
11	○기업역량 증빙자료(예:이노비즈인증서, 특허 등)	(권고)

0 문의처

- (재)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정성룡 주임연구원 Tel: 063-219-2165 / E-mail: srjeong@jbtp.or.kr

〈기타 사항〉

- 사업 신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신청 사실에 대해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
- 신청서 오기재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-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
- 선정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이 있을 수 있음

5. 유의사항

O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자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
- 신청자(기업, 대표자, 총괄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-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,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.
- 본 공고로 제출된 기술 소유권은 사업 지원 제출자에게 있으며, 평가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기술 외부유출은 없음.
-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사업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필수 참석해야하며, 미 참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-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은 향후 5년간 (재)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성과조사에 응해야함.
-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
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(2020.1.1.)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가됨

* 재제부가금

- ① 허위청구(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: 받은 지원금의 5배
- ② 과다청구(받아야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청구하여 받은 경우): (받은 지원금-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의 3배
- ③ 목적 외 사용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: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의 2배

사업신청, 용역, 구매,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,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(재)전북테크노파크 고객만족감사팀(063-219-2351)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.